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의안 번호	관련 209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20.
제출자 : 김영진 위원

1. 수정이유

본 위원회가 집행기능을 갖지 않는 임의적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,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

2. 주요내용

- 안 제12조 “본 협의회 활동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”를 “본 협의회 활동 및 운영에 따른 경비”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
수정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
수정 한다

제12조 “본 협의회 활동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” 를 “본 협의회 활동 및 운영에
따른 경비 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
수정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2조(실비보상 등) 본 협의회 활동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.	제12조(실비보상 등) 본 협의회 활동 및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.